

<p>員입니다.</p> <p>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水資源管理委員會를 대표하여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改正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p> <p>먼저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p> <p>지금 本議員이 보고드리는 의안번호 제 1155호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앞서 제102회 臨時會 의안번호 제1100호로 동 조례개정안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우리 委員會는 제102회 臨時會期中인 1998년 3월 13일 동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하수도 요금 인상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의 개정에 앞서 기업회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하수도 행정체계의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있는 서민대중의 하수도 사용 요금 인상부담을 덜어주는 등 요금의 조정이 선행되어야겠기에 동 조례안을 부결처리한 바 있습니다.</p> <p>이에 서울特別市長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을 서울特別市 시정 전반에 걸쳐 동시에 추진할 의사를 보여왔고, 또한 서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용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왔기에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본 조례안을 재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p> <p>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p> <p>하수도 사용료가 기본요금체계로 되어 있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하여 기본요금체계를 조정하여 가정용과 영업용의 기본사용량을 현행 15m³에서 10m³로 조정하여 다수 영세서민 대중의 인상부담을 경감케 하고, 기본요금을 현행 1m³당 49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가정용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민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용에는 욕탕용 1종은 1m³당 104원에서 100원으로 인하조정하였으며, 특수목욕장업, 안마시술소 등 욕탕용 2종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현행 8만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업종으로 구분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1m³</p>	<p>당 평균 110원에서 128원으로 15.1%로 인상하였습니다.</p> <p>인상기준은 영업용 1종, 2종, 공공용 등 다양 사용업소는 절수유도를 위하여 평균인상을보다 다소 상향조정하였고, 가정용, 공중용 등 서민대중의 생활과 직결된 요금은 평균인상을보다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업종별 세부인상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한편, 이 조례안 중 요금인상에 관한 조항은 상반기 중에서는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98년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p> <p>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있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듭하여 세계적으로 직면한 환경보전문제와 우리 서울特別市가 추진하고 있는 전량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하수사용료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편 이번 하수도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대중에게 미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검토분석하여 부분별로 적정한 인상요율을 심사하여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p> <p>아무쪼록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照)</p> <p>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제2항중 "급수조례"를 "수도조례"로 한다.</p> <p>제18조 제1항중 "급수사용료와"를 "수도요금과"</p>
---	--

22 (第103回－第2次)

<p>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급수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한다.</p> <p>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도 사용요금 조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은 199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4개월마다 검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8년 7월 검침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2. 1998년 8월 검침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1/4$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량의 $3/4$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	--

<별표1>

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업종	1개 월기본요금		초과사용료	
	기본수량(m^3)	기본요금(원)	사용구분(m^3)	m^3 당단가(원)
가 정 용	10	490	11~30	70
			31~50	200
			51이상	350
영 업 용 1 종	10	500	11~30	70
			31~50	200
			51이상	370
영 업 용 2 종	10	500	11~30	70
			31~50	200
			51~100	370
			101~500	470
			501 이상	540
욕 탕 용 1 종	사용수량 $1m^3$ 당			100
욕 탕 용 2 종	200	86,000	201~300	540
			301~500	740
			501 이상	850
공 공 용	사용수량 $1m^3$ 당			120
산 업 용	사용수량 $1m^3$ 당			120
공 중 용	사용수량 $1m^3$ 당			40

주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사용자
영업용1종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1종 해당업종 사용자
영업용2종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2종 해당업종 사용자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 채 재배업소는 제외한다)
욕탕용1종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1종 해당업종 사용자
욕탕용2종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2종 해당업종 사용자

업 종	구 분 내 용
공 공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사용자 ○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제외)
공 중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
산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투채재배업체

주1 가정용 세대분할 및 업종조정 등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적용한다.

32.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14時 4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4. 9.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4.1. 서울특별
시장

나. 회부일자 : 1998.4.2.

다. 상정일자 : 1998.4.6.(제103회 임시회 제1
차 문화교육위원회)

다. 심사및의결일자 : 1998.4.6.(제10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진 문화국장)

가. 제안사유

'93년이후 인상요인이 누적된 세종문화
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용료 납부기한을 대강당의 경우 사용예정일 60일전으로 변경하고, 회관과 공동주관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연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합과 아울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함.

○ 대관시설사용신청수수료(950원)를 우리
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별표〉
중 대·소강당 등 30개 항목에 대한
사용료를 평균 22.7% 인상하고, 대·소
강당 동시통역시설사용료 등 8개 항목
을 삭제하였으며, 무선 마이크 등 29
개 항목을 신설하고 〈별표〉의 비교부
분 일부를 수정함.

다.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발급확인사항(22종)-생략
2. 제증명발급확인사항(12종)-생략

3. 전문위원 겸임보고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93
년이후 인상요인이 누적된 세종문화회관